

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

☐ 법령명

-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-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

2026. 9. 15.

법 제 처

관보시스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 요청 시 법제처와 협의한 입법예고기간을 엄수해 주시고, 입법예고기간 등 협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법제처와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단축 사유(농림축산식품부)

- 동 법률*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·관리하고, 농업생산기반을 보전하면서 농업·농촌의 소득 제고 목적으로 제정('26.6.16.) 및 시행('26.12.17.) 예정

* (하위법령) 발전사업자 범위·허가기준 요건, 의무영농 이행점검, 제재방식 등 제도 운영 방안 구체화

- 범정부(행안부·농식품부·기후부)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'햇빛소득 마을' 사업의 주요 제도 기반으로 기능
 - 하위법령 제정 지연 시, 법 시행(12.17.)에 맞춰 사업을 준비한 국민에게 사업 차질에 따른 재산상 손실, 주민공동체 갈등 등이 우려되므로, 하위법령 제때 마련을 위한 신속한 입법절차 추진 필요
- (제때 시행을 위한 기간 단축) 제정 법률 시행일 전 규제·법제심사 기간을 감안,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 제때 시행을 위한 기간 단축 필요
 - 단축 입법예고 기간 : '26.9.16 ~ '26.9.28.(12일간)

○ 향후 일정

- 규제심사('26. 10. 7. ~ 11. 27.)
- 차관회의('26. 12. 3.)
- 국무회의('26. 12. 8.)

○ 입법예고기간: 12일간('26. 9. 16. ~ 9. 28.)

□ 검토 의견(법제처)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, 법령 등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,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함.
 -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

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2건은 발전사업자 범위·허가기준 요건, 의무영농 이행점검, 제재방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.
- 상위법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('26. 12. 17.)에 맞춰 하위법령인 시행령·시행규칙을 제때 마련하여 제도적 공백을 방지하고, 법 시행에 맞춰 사업을 준비한 국민의 사업 차질에 따른 재산상 손실 및 주민공동체 갈등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부처의 의견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.
- 입법예고기간: 12일간